

디지털 · 결제

카드가맹점 가입의 현장방문 의무가 5월 6일 바뀌었다

전자확인만 허용됐지만 허위 사진을 가려낼 공통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2026년 5월 6일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2020년 이후 규제특례 자료를 대조해 비대면 확인의 범위, 모집인·카드사의 책임과 공개되지 않은 기준을 구분했습니다.

발행
2026.08.21

연번
2026_46

읽는 시간
6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개정을 확인책임의 폐지가 아니라 증거 수단의 변경으로 본다. 2020년 11월부터 규제특례로 시험한 위치정보 포함 사진 방식이 일반 제도로 넘어왔다. 다만 전자증빙의 최소 항목·보관기간과 조작·오인 확인 때 모집인과 카드사가 나눠 질 책임은 공개된 시행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확정된 사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은 2026년 5월 6일부터 사업장 방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가맹점의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항목	확인된 내용	비고
시행일	2026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36314호
확인 수단	방문 또는 전자적 방법	확인 의무는 유지
전자자료 사례	위치정보 포함 사진	금융위원회 설명
특례 시작	2020년 11월	혁신금융서비스
일반제도 전환	약 5년 6개월	월 단위 단순 계산
공개 통계	확인되지 않음	신청·단축·오판정 건수

모집인은 실제 영업 여부뿐 아니라 자신이 적법한 모집인임을 알리고 약관과 수수료 전가 금지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재위탁 금지도 그대로입니다.

법이 전자확인을 허용해도 모든 카드사가 즉시 같은 방식으로 가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 채널과 제출자료는 카드사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런 구조인가

카드회사는 가맹점의 매출전표를 매입하고 정산대금을 지급합니다. 실제 판매가 없는 허위매출이면 정산금 회수와 카드회원의 취소·환불 분쟁이 생기므로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종전에는 모집인이 사람과 장소를 직접 봤습니다. 전자방식에서는 신청인이 위치정보와 사진 등을 보내고 모집인이 확인하며 카드사가 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출·확인·승인의 세 단계는 남습니다.

전자자료는 과거 사진 재사용, 다른 장소 촬영, 위치정보 삭제·변조라는 다른 오류를 만듭니다. 온라인·이동형 사업은 무엇을 사업장 증거로 볼지도 다릅니다.

신청인은 자료의 진실성을, 모집인은 영업 여부 확인과 설명을, 카드사는 모집 절차와 가맹계약·정산 위험을 관리합니다. 구체 책임은 위반행위·계약·조사 결과에 따라 나뉩니다.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적용대상은 전자방식으로 가맹점 가입을 처리하는 신청인과 모집인입니다. 업종·지역·매출액별 일괄 제외는 발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간 신청 건수와 단축 일수, 전자확인의 오판정률은 공개되지 않아 제도 전체 절감액이나 피해 가능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허위가맹점이 100만원의 가공매출을 만들었다는 가정만으로 회수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정산시점·가맹점 잔액·계약이 필요합니다.

정상 사업자에게는 카드매출 개시가 빨라질 수 있지만 매출 증가액은 사업별로 달라 공식 수치 없이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례→일반제도	약 66개월	2020.11~2026.5
허위매출 가정	100만원	회수액은 계산 불가
오판정률	미공개	공통 통계 없음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전자증빙 최소 목록 사진 수·촬영시점과 사업자등록·임대차 자료의 조합을 의무화한 공통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2 진위확인과 오판정 위치정보 변조·과거 사진·중복 신청 탐지와 사람의 재심사 경계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3 보관과 삭제 위치정보와 사업장 사진의 보관기간·접근권한·정정·삭제는 실제 앱 동의서와 처리방침을 봐야 합니다.	04 책임의 연결 거짓 제출·모집인 확인소홀·카드사의 이상거래 누락을 자동으로 한 주체에게 배분하는 규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5 시행령 문구 정합성 제1항의 전자확인과 제5항의 사업장 방문 등의 방법을 함께 적용하는 후속 지침이 필요합니다.	

지금 할 일

- 국민
- 카드사 또는 등록 모집인의 공식 앱인지 확인하고 등록정보와 실제 영업장 정보를 일치시킵니다.
 - 위치정보·사진의 수집 목적과 보관기간을 읽고 제출 화면을 보관합니다.
 - 접수일·제출목록·보완요청·가맹점번호와 계약 뒤 수수료율·정산계좌를 기록합니다.

- 대상회사
- 전자증빙 최소항목과 촬영시각·위치 검증, 중복사진 탐지와 재심사 기준을 문서화합니다.
 - 신청인 제출·모집인 확인·카드사 승인을 나눠 감사기록으로 남기고 이의신청 절차를 표시합니다.

- 당국
- 제6조의10 제1항과 제5항의 관계를 지침으로 명확히 합니다.
 - 오판정·보완·거절·허위가맹점 적발을 공통 정의로 집계하고 최소수집·보관·삭제를 점검합니다.

· 증빙 최소항목, 위치정보 보관기간, 오판정 이의절차와 결과 통계가 공통 기준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A

카드사별 내부통제

B

공통 최소기준과 공시

· 금융당국의 감독지침과 여신금융협회 표준절차에서 증빙·보관·이의절차·통계 항목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4개의 연결 지식

금융상품 신용카드

금융상품 보통예금

제도와 규칙 설명의무

피해구제 자료열람요구권

확인한 사실·숫자 8건

8 확인 항목	7 1차 자료	1 파생 계산	6개월 뒤 추적 예정
------------	------------	------------	----------------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파생 1차 자료의 수치를 이용한 계산

01	1차	비대면 영업확인 허용과 2026년 5월 6일 시행 금융위원회 2026년 4월 28일 발표	원문 열기 ↗
02	1차	방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영업 여부 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제1항	원문 열기 ↗
03	1차	모집인 영업기준의 실제 영업·등록단말기 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제5항	원문 열기 ↗
04	1차	입법예고에서 위치정보 포함 사진 방식 제시 금융위원회 2026년 1월 22일 발표	원문 열기 ↗
05	1차	모바일 앱 증빙 업로드 방식의 규제특례 금융위원회 2022년 11월 9일 성과 자료	원문 열기 ↗
06	1차	가맹점 본인확인·수수료 전가·허위거래 관련 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원문 열기 ↗

추적 예정

금융당국의 검사·제재 자료와 여신금융협회 표준절차에서 증빙 미비, 위치정보·사진 보관, 중복·변조 탐지와 이의절차가 공개되는지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정정 없음. 위치정보 포함 사진을 법정 유일 수단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든 전자확인 사례로 한정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연구소의 분석이며 금융당국·카드사·가맹점모집인의 공식 입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가맹계약·정산·손해배상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